

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소상공인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2. 10. 4.] [중소벤처기업부령 제64호, 2022. 10. 4., 일부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 (소상공인정책과) 044-204-782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5. 28.>

제1조의2(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·운영 지원대상 업종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0. 2. 21.>

1. 도매업자인 경우: 도매 및 상품중개업
2. 소매업자인 경우: 종합 소매업

[본조신설 2016. 1. 29.]

제1조의3(손실보상의 신청)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1. 10. 19.]

[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<2021. 10. 19.>]

제1조의4(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)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·상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2서식과 같다. <개정 2021. 10. 19.>

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2. 금융거래확인서
3.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
4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[본조신설 2020. 2. 21.]

[제1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<2021. 10. 19.>]

제1조의5(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) 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10. 4.>

1.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
 - 가. 채무자의 강제집행, 폐업,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 - 나.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
 - 다. 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
 - 라.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
 - 마.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
 2.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
 - 가.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
 - 나.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(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)
-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2. 21.]

[제1조의4에서 이동 <2021. 10. 19.>]

제2조(소상공인연합회 회원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 8. 27., 2015. 5. 28., 2020. 2. 21.>

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로 한다.<개정 2014. 8. 27., 2015. 5. 28., 2017. 2. 20.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가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

다.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, 조합 또는 단체

2.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

3.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

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, 소상공인 관련 단체,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 2. 20.>

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
제3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사업
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5.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

6. 회원의 가입·탈퇴 및 제명(除名)

7.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
8. 임원의 정수(定數)와 그 선임(選任) 방법

9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10. 경비의 부담

11.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

12. 사업연도

13. 해산 사유

14. 공고 방법

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.<개정 2014. 8. 27.>

제4조(발기인)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·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.

제5조(창립총회)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,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·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
2. 사업계획의 설정
3.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
-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

제6조(의사록) ① 창립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,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설립허가)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20. 2. 21.>

1.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(名簿)
2. 회원의 명부
3. 창립총회 의사록
4.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
5. 정관
6. 사업계획서
7. 재산 명세서
8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20. 2. 21.>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제8조(운영의 공개) ① 연합회는 정관·규약·규정, 총회·이사회 의사록,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.

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

부칙 <제64호, 2022. 10. 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